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실명을 사용케 하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혹한 정책은 절대로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면 쓸 수 없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 위해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다.

정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인터넷상의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실명제'처럼 대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자유를 경시하고 전반적인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을 함부로 논하는 세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책적 의미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공간, 즉 자유게시판이나 댓글게시판에 의견 등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10여 년 전쯤에 실시했던 정책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을 올릴 때 누가 올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했던 이른바 '본인확인제도'와 인터넷 실명제는 실질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본인확인방식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새로운 인터넷 실명제는 본인확인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자신의 이름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여론이 나뉘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의 타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찬반의견이 갈릴 때는 정책결정권자가 이를 결정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설사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이라면 이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입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정책으로 실시가 가능하겠지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2.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여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0월 15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온라인 댓글실명제 도입에

1.
리얼미터 홈페이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70% vs 반대 24%" 참조.

1.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대중들의 지나친 '악플'이 지목되면서, 악플 근절을 위해 인터넷 표현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상 표현물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수 세력의 기사 댓글창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실명제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그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입이 쉽게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임을 논하기로 한다.

2.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인터넷상 실명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크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와 연계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표현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들과의 합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 구체적으로 리얼미터가 인터넷 댓글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매우 찬성' 33.1%, '찬성하는 편' 36.4%으로 찬성하는 응답이 69.5%로, '매우 반대' 8.9%, '반대하는 편' 15.1%로 반대하는 응답 24.0%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다수가 인터넷 댓글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 구체적으로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인터넷 댓글을 실명으로 달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주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악성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5.5%로, '과도한 통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 23.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이 행한 최근의 조사에서도,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악플을 불쾌해하며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 구체적으로 악플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물어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를 공개하는 준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76%가 찬성했고, "댓글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도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리얼미터 홈페이지, "인터넷 댓글실명제 도입, 찬성 65.5% 반대 23.2%" 참조.

3.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지난 10.22~25일 성인 31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악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http://www.epeople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6 기사참조.

기초하여 실명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그러나 법으로 실명제를 규정하면 대상 서비스 내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익명 표현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용자와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확인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개관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이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결정요지에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정부가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미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었던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제도'는 첫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즉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둘째에 해당하는 민간게시판의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에 대하여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4] 헌재는 "제도시행 이후 불법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커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민간게시판에 대한 본인확인제도는 제도 실시

4.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 참조.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조치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이하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5. 7. 30. 결정, 2012헌마734). 결정요지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5년만에 사라지게 되었는데, 기억해 둘 것은 이로 인해 폐지된 것은 민간영역의 게시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에 국한되며, 공공기관 게시판은 여전히 실시 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게시판에 대한 본인확인제의 위헌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연구검토하여 충분히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준실명제'는 댓글 아이디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5]

4.현재 실시중인 인터넷 실명제의 내용과 일반적 실시의 필요성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두고 찬반의견의 대립과 그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현재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게시판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관련 법률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외의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강력히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본인확인제도 가운데 민간게시판이 아닌 공공게시판의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확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이른바 공공기관 등에서는 본인확인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강력하게 본인확인조치를 통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규정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즉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이다. 이에

5.
이경환, 이슈토론 참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1/916521/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표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되어 진행중이다(2018헌마456).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가.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목적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목적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이다.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불법정보의 유통은 근본적으로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때문에 이용자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게 되고 자기 검열을 해태하여 인터넷 공간이 불건전해진다는 것이다. 실명제는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향후 신원확인을 통하여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표현 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정보 등의 게시를 자제하도록 하고 책임있는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불법·유해 표현물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실제 불법정보가 게시된 경우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목적 중 하나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위반

그런데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은 실명제와 같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전에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불법정보의 게시자는 현재의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의 기술을 통하여서도 특정하고 수사할 수 있으며, 게시자에 대한 사후적인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수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의하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현재 공공기관 게시판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게시판에 대하여 강력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민간게시판 영역에도 악플 등에 의한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인터넷 실명제 도입반대론의 보완조치 내용과 의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인터넷공간을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일괄규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지만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에 동의한 사업자만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는 등 인터넷 실명제 유사정책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미 상당수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하는 이른바 '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이른바 악플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과 문화의 문제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6]

도입반대론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악플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혐오표현

6.
예컨대 인터넷 실명제 찬반양론 기사 참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1/916521/ .

과도하다고 할만큼 엄정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소·고발 및 처벌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여러 제재수단의 집행만으로 실명제가 목적하는 일반예방 효과는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시정요구 제도 등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조항들이 있음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여, 인터넷에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사전에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수사편의에 치우쳐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다. 법익 균형성 위반

1) 익명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표현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근절을 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악플에 대한 처벌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한다. 악플에 대하여 복잡한 고소·고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거론한다. 일반적으로 악플은 형사처벌 형량이 낮고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어 악성댓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습적 악플러는 블랙리스트로 구분해 활동을 막는 등 심의·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타당하고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는 주장들이다. 이와 같은 사후적 정책은 반드시 가해자와 범죄자의 처벌 위주의 정책이지만 이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정책의 실시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6. 인터넷표현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규제가 바람직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논거를 보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의견을 개진하는 자는 당연히 실명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국가가 반드시 실명으로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실명으로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 위축효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명제 반대론은 나아가 표현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한 후 이미 존재하는 규제수단이 충분한데 또다시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가권력이나 막강한 정치·경제적 거대 권력에 저항하고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각종 보복이나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익명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일반적인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폐해도 있다. 즉, 실명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신원정보, IP 주소 등의 제공·확보에 따른 규제나 처벌 혹은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전반적인 표현행위를 억제·위축시킨다. 실제로,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가 약 1/3로 대폭 감소하여 이용자 간의 대화나 소통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

실명제는 이렇듯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축시킨다.

2) 실명제 시행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 실명제의 실효성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1.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설명한다.[7]

이러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익명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놔두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이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면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맘놓고 표현하도록 해놓은 후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받게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현의 내용에 대하여 잘잘못을 평가하여 위법이 있을 때 형사처벌받게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후처벌과 관계없는 사전적 규제정책이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려는 내용의 표현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이름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금지하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쓰면 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욕설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난무하는 인터넷상황을 조금이나마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자율규제정책의 하나일 뿐이다.[8] 자신의 실명을 걸고 표현을 하도록 하면 불법적인 내용을 함부로 표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사료되며 사이버모욕과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상당수 혹은 일부라도 줄일

7.
예컨대,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NRF KRM 2005 참조.

8.
정완, "인터넷 실명제 도입 확대해야" 법률방송뉴스 칼럼 2019.5.24자 참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1

그러나 실명제가 목적하는 효과는 이용자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원이 추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의견을 개진하리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고 있다. 실명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요 포털은 회원가입 시 간접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을 하여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미 자율적으로 준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SNS는 보통 이용자들이 인적 정보를 상당히 노출하고 활동한다. 그럼에도 악플 등의 문제는 공간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플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악플이 근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다.

5. 국제 동향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나 면책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불법·유해정보가 게시되는 때에 민관이 협조하여 사후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 중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실명을 사용케 하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혹한 정책은 절대로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면 쓸 수 없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 위해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다.

7. 마무리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꼭 대조해야 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면 100% 완벽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인터넷 실명제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 이용자의 대부분은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종 댓글 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때에도 실명 사용을 권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가입한 통신회사의 협조를 얻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익명사용을 굳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익명게시판을 제공하고 클릭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페이지를 숨겨두고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에 의하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성명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고, 나아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사실상 검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타인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성명권 침해가 되겠지만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성명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또 검열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검열할 때 쓰는 표현이지 작성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검열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1995년에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 선거 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오하이오주 법률을 내용규제에 해당하여 수정헌법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적 언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여 위헌선언한 바 있다.[2]

'프랭크 라 뤼FrankLa Rue'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다.[3] 실명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상 제재 위협으로 인하여 의견 표명을 꺼리는 경향을 보일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실명제는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법상 인권기준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제도다.

6. 나가며

201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오주현, 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글을 작성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자는 8% 정도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 수용자 의식

2.
홍진수, '인터넷 실명제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21, (2006. 8)

3.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요컨대 불법한 내용의 글을 쓸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면 되는 것이고, 설사 불법 콘텐츠를 올리고자 해도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오하고 글을 올리면 그뿐이다. 불법한 내용을 게시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인터넷 뉴스에 직접 댓글을 쓴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1%에 불과했다. 10% 정도의 댓글창 이용자 중 심각한 수준의 악플을 게시하는 이용자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소수의 악플러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당신이 범죄자일 수 있으니 당신의 신원을 먼저 확보해야겠다'거나, '당신이 당당하다면 신원을 공개하고 행동하라'는 식의 주문을 하는 것은 폭력이다. 최근 홍콩 시민들이 시위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복면금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듯, 악플이나 불법정보 역시 온라인 세상에서 공기처럼 상존한다. 이들의 폐해를 줄이는 것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적이지만, 이것만이 절대시되어 모든 '수단'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적정하고 비례한 수준인지가 항상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의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실명제'처럼 대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자유를 경시하고 전반적인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을 함부로 논하는 세태는 지양되어야 한다.